

2020년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온라인 원격화상 수련 인정기준 및 시행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온라인
원격화상 수련 인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29일

 (사)한국상담학회 자격검정위원회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수련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수련 인정의 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회는 대위원회의 논의(2020.7.4.)와 서면 의결(2020.7.30.) 결과에 따라 대면 수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온라인 원격화상 수련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원격화상 시스템 사용이 보편화 되었고, 적용이 가능한 일부 수련항목에 **최대 30%까지 조건부 인정**하여 대면 수련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문상담사 자격취득 준비를 위한 수련은 가능한 현장 경험으로 충족하기를 권하며 현장 진행이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위반 시 제70조, 제71조에 의거하여 징역과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및 박탈, 제명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의 윤리적 문제와 수련의 질적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주의하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I. 원격화상 수련이란?

각기 다른 장소에 실재하는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에 모여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통해 진행한 수련

II. 원격화상 수련 인정기간

구분	시작일	종료일
수련 진행일 기준	2020년 9월 1일(화)부터	2022년 8월 31일(수)까지

◎ 기간이 연장될 경우,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공고 예정

Ⅲ. 원격화상 수련 인정기준

사)한국상담학회 회원유지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심사에 지원하는 해의 자격검정 시행공고와 원격화상 수련 인정 시행공고 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함

1. 인정 범위 및 시간

자격등급		1급				2급	
수련영역		A범주		B범주		C범주 <small>*D범주는 C범주*2배</small>	
		총 수련 시간	원격수련 인정시간	총 수련 시간	원격수련 인정시간	총 수련 시간	원격수련 인정시간
내담자 경험	개인상담 내담자	20시간	6시간	30시간	9시간	10시간	3시간
	집단상담 집단원	90시간	27시간	120시간	36시간	30시간	10시간
개인상담	접수면접	-	-	20시간	6시간	20시간	6시간
	상담자 경험	180시간	54시간	240시간	72시간	60시간	18시간
	슈퍼비전	50시간	15시간	70시간	21시간	20시간	6시간
	사례보고서 제출	-	-	1사례	1사례	1사례	1사례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	2사례	2사례	2사례	2사례	-	-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	40시간	12시간	50시간	15시간	10시간	3시간
	자율선택수련	70시간	21시간	70시간	21시간	-	-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	80시간	24시간	105시간	32시간	25시간	10시간
	슈퍼비전	10시간	3시간	15시간	5시간	5시간	1시간
	사례보고서 제출	-	-	1사례	1사례	1사례	1사례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	1사례	1사례	1사례	1사례	-	-
기타 요건	연차 학술대회 연수/학술모임참여	1회 60시간	무제한	2회 80시간	무제한	1회 20시간	무제한

기준시간 이하로 진행하시고 가능한 현장 경험으로 충족하기를 권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위반 시 제70조, 제71조에 의거하여 징역과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및 박탈, 제명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인정조건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는 해의 자격검정 시행공고 수련요건 기준에 아래 장소, 기능설정, 영역별 기준을 추가하여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함

항 목		내 용
장소 확보 (참여자 실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밀보장이 가능한 개인 단독공간 ② 원활한 통신상태
사용프로그램 기능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시간 모습(상태) 확인과 대화 가능한 프로그램 ② 참여자의 본인(실명) 확인 후 참여를 수락 ③ 참여자의 본인(실명) 확인 불가 시 경고 후 강제 퇴장 ④ 불특정 다수의 익명 참가자를 제한 ⑤ 불특정 다수의 녹화 및 상담내용 저장을 제한 <p>• 예시: Zoom(줌), TeamViewer(팀뷰어), skype(스카이프) 등</p>
수련영역		인정기준
내담자 경험	내담자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상담: 상담사 1명, 내담자 1명 - 집단상담: 지도자, 집단원 포함 5~15명(시작부터 종료까지)
	집단원경험	
상담자 경험	접수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윤리강령 제6조) 상담자는 상담기록(녹음, 녹화 등) 및 보관에 관해 내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② (윤리강령 제3조)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동의 ③ 상담내용의 사례지도나 발표 시 <u>온라인 화상</u>으로 진행되는 사실과 <u>사용프로그램</u>, 상담사례 전달 및 배부방식, 사례를 공유하는 대상과 인원에 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④ 상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장면을 불법 촬영, 녹취, 유포하지 않을 것에 대한 참여자(내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p>상담 시작 전 위 내용을 포함한 문서, 녹음, 녹화, 기록자료 보관</p>
	개인상담 상담자경험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	
개인/집단 상담	사례보고서	<p>사례: 원격화상 진행사례 제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1~3명 - 공개사례발표회 10~50명(발표자, 수련감독자 2인 포함) ▶사례: 원격화상 진행사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담과 관련 없는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② 이메일, 팩시밀리, 전화, 음성메일, 자동응답기 등을 사용해 정보 전송 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함 ③ 당일에 공개하고(사전배포 금지) 프로그램 종료 즉시 폐기해야 함 ▶관리자 1명 필수: 진행 중에 참여자의 얼굴과 장소(지하철, 공고장소 불가)를 계속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경고 후 퇴장시켜야 함 ▶내담자 동의서: 위 내용 포함 ▶참여자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례를 배부받은 원격화상 수련 참여자는 프로그램 종료 즉시 사례를 흔적 없이 폐기해야 하며, 불법 촬영, 녹음, 녹취, 유포, 발설하지 않을 것에 대한 사전동의 ② 참가 신청양식에 동의서를 포함하여 받고, 시작 시 구두로 재확인
	슈퍼비전, 공개사례발표 발표/참여	

V. 기타

1. 유의사항

- 1) 공통기준에서 사용프로그램의 기능설정이 한 가지라도 어려운 경우 원격화상 진행 불가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함
- 2) 온라인 원격화상 수련만 인정하며 참여자의 상태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매체(프로그램)는 인정 불가함(예: 전화, 채팅, 게시판 형식의 상담)
- 3) 모든 참여자의 현 위치가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진행 불가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함(예: 카페, 공원, 대중교통, 공공장소, 화장실 등)
- 4) 보이는 내담자 주변에 보이지 않는 참관자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대면)상담보다 녹음, 녹화, 촬영, 불법 배포가 쉬운 점에 주의해야 함
- 5)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예: 대학상담소의 사례는 내담자의 학과/학년이 공개될 경우, 발표자의 소속에 따라 내담자를 특정하기 쉬움)
-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사)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및 박탈, 제명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수련기록부 작성방법

- 1) 온라인 수련기록부: 장소, '온라인 원격(화상)'✓체크, 프로그램명 기록
예)

상담기관(장소)	마음지킴상담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 원격(화상)프로그램	ZOOM
----------	---------	--	------
- 2) 수기형 수련기록부: 온라인, 프로그램명, 장소(예: 온라인/ZOOM/마음지킴상담실)

3. 문의

사)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 - 전문상담사 - 자격관련 Q&A / 02-875-5830(내선 1번)

[별첨] 온라인 원격화상 상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